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156

발의연월일: 2024. 7. 23.

발 의 자:서삼석·조인철·정동영

임호선 • 이기헌 • 염태영

이용선 • 박수현 • 장종태

안도걸 • 윤준병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이상조류(異常潮流), 적조현상(赤潮現象), 해파리의 대량발생, 태풍, 해일, 이상수온(異常水溫)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어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조류로 인한 양식업, 내수면어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업재해의 범위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또한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중복지원 제외 규정의 경우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농가와 어가는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불합리하게 해석되는 측면이 있음.

이에 어업재해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는 한편,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

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정비하여 피해를 입은 농·어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·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 등).

법률 제 호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"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"를 "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. 이하 같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이상수온(異常水溫)"을 "이상수 온(異常水溫), 유해야생동물"로 한다.

제4조제1항 단서 중 "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, 피해의 경감,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"를 "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령에 따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농업재해"란 가뭄, 홍수, 호	2
우(豪雨), 해일, 태풍, 강풍,	
이상저온(異常低溫), 우박, 서	
리, 조수(潮水), 대설(大雪),	
한파(寒波), 폭염(暴炎), 황사	
(黃砂)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병해충(病害蟲), 일조량(日照	
量) 부족, 유해야생동물(「야	
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	
법률」 제2조제5호의 <u>유해야</u>	
생동물을 말한다), 그 밖에	- <u>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. 이</u>
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	<u>하 같다</u>
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	
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	
는 농업용 시설, 농경지, 농작	
물, 가축, 임업용 시설 및 산	
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.	
	<u>.</u>
3. "어업재해"란 이상조류(異常	3
潮流), 적조현상(赤潮現象),	

해파리의 대량발생, 태풍, 해일, <u>이상수온(異常水溫)</u>,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.

4. ~ 13. (생략)

제4조(보조 및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 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 다. 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<u>「야생생물</u>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, 피해 의 경감,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 에서 제외하되,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「농어업재해보험 법」 및 「풍수해·지진재해보 험법」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 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

<u>이상수</u> 온(異常水溫),
<u>유해야생동물</u>
4. ~ 13. (현행과 같음)
제4조(보조 및 지원) ①
「야생생물 보호 및
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
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
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
또는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경
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지원금
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
지 아니하되
<u> </u>

지원할 수 있다. ② ~ ⑧ (생 략)

-----.

② ~ ⑧ (현행과 같음)